

프랑스 혁명 시대 선서파 사제의 선서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

—센에와즈 도(道)의 선서파 사제 베르투의 강론을 중심으로

백 인 호

1. 역사적 맥락

I. 성직자 민사 기본법과 1791년의 충성 선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 제헌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가 실현한 여러 개혁 조치들 가운데 카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만큼 엄청난 것은 없었다. 1789년 8월 26일 제헌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공포한 직후, 카톨릭 교회의 재조직에 착수하였다. 성직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특권(예컨대 성식 사례 *casuel* 와 십일조)을 포기하였고, 1789년 11월 2일에는 "모든 성직자의 재산은 국가의 처분하에 놓인다"고 선언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1790년 2월 13일의 법령은 구호나 교육 사업을 하지 않는 수도원의 종신 허원을 금지시켰다.

교회에 대한 제헌의회의 급진적 개혁 조치의 정점을 이룬 것은 1790년 7월 12일 제헌의회가 통과시키고 7월 22일 루이 16세가 받아 들인 '성직자에 관한 민사 기본법' (이하 민사 기본법으로 약기함)이었

다. 민사 기본법은 첫째, 구체제하의 교구 및 본당의 지리적 경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1도(道)마다 1명의 주교만을 임명하게 되었다. 둘째, 주교와 주임사제는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셋째, 국가가 성직자에게 봉급을 지급하게 되었다.

혁명이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게 된 것은 민사 기본법 그 자체보다는 민사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선서를 요구한 1790년 11월 27일의 법령에 의해서였다. 공무원으로 대우받게 된 성직자들은 선서를 통해 새로운 민사 기본법을 찬성하든 혹은 반대하든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이제 프랑스 교회는 교황에게 충성하고 민사 기본법을 거부하는 '거부파 *réfractaires* 사제'와 민사 기본법을 수락하고 선서 한 '선서파 *assermentés* 사제'로 분열되었다. 이후의 혁명 과정에서 거부파 사제들은 망명 귀족을 포함한 특권 계급과 결합하여 반혁명적 선동을 강화하였고 그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을 반혁명 대열에 끌어들였다. 따라서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선서의 요구는 교회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를 이분시키게 되었다.

이제까지 1791년의 선서 연구에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선서가 초래한 결과와 선서파와 거부파의 수량적 통계, 선서에 직면한 성직자들의 선택 동기 등이다. 19세기에는 주로 교구의 혁명적 경험에 관심을 가진 지방 성직자들이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선서의 부과와 그에 대한 성직자들의 대응을 '종교적 박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았고, 따라서 이들의 주요 관심은 선서를 거부한 '신앙의 순교자들' 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종교사 연구는 르 브라 Gabriel Le Bras를 중심으로 한 '종교 사회학파'의 영향으로 중대한 발전을 거듭하였고, 특히 르 클레르크 Dom Leclercq 신부와 피자니 Paul Pisani 신부에 의해 입헌교회 Eglise Constitutionnelle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자극을 받은 역사가들은 선서파 사제들의 선서 동기에 대해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방사 연구들을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제시하였다.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의 영향과 압력, 주교의 영향, 직위 상실에 따른 염려, 개혁에 대한 기대 등이 선서의 동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에는 대부분 민사 기본법의 여러 조항들에 대한 판단, 혁명에 대한 견해, 교회의 개혁에 대한 기대 등 성직자들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주의와 설명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와 미국의 역사학자 타켓 Timothy Tackett은 1986년에 『18세기 프랑스의 종교·혁명, 그리고 지역 문화: 1791년의 성직자 선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¹⁾ 그는 83개 도의 고문서 보관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1791년의 선서에 관한 모든 사료들과 지방사 연구서들을 총망라하여 선서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를 제시하였다. 이 책은 현재 선서에 관한 가장 심도 있는 연구서로 평가받고 있다.

Ⅱ. 선서파 사제와 거부파 사제의 선서 동기

'성직자에 관한 민사 기본법'에 대한 선서에 직면한 성직자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편지나 팜플렛의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히 선서파 성직자들이 선서시에 지방 행정 관리들과 본당 신도들 앞에서 행한 강론은 그들의 선택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타켓은 파리 국립 고문서 보관소 Archives Nationales에 소장되어 있는 약 200여 명의 본당 신부들의 선서 수락 선언문들을 분석하여 성직자들의 선택이 개인적 경험과 경력 외에도 그들이 시무했던 지역의 독특한 문화나 집단적 저항 운동의 경험, 다양한 신학적 전통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자

1) Timothy, Tackett, *Religion, Revolution and Regional Culture in Eighteenth-Century France—The Ecclesiastical Oath of 1791*,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이 책으로 같은 해에 불어 번역판이 출간되었다. Translated by Alain Spiess, *La révolution, l'église, la France*, Paris: Cerf, 1986 (Préface de Michel Vovelle, Postface de Claude Langlois). 그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대략 52%에서 55%에 달하는 사제들이 1791년의 선서를 수락하였다.

하였다.²⁾

1) 거부파 사제

타켓에 따르면, 거부파 사제들은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거부파 사제들은 주로 신학적 차원에서 민사 기본법은 오류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종교에 적대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에게는 권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였다. 일부 신부들은 교황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황이 선서에 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제한적인 선서를 하거나 아예 선서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신부들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의 철저히 계서화되고 훈련된 교회의 시작에서 선서를 고칠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믿음과 교회 고위 성직자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강조하였다. 오직 교황과 공의회만이 영적인 문제들을 다룰 자격이 있고, 세속 정부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거부파 사제들은 선서 문제를 계몽철학과 교회 와의 투쟁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으로 카톨릭 군주제를 옹호하였으므로, 제헌의회에 대항해 부르봉 왕가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이 선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선서파 사제

선서파 사제들의 선서에 대한 설명은 거부파 사제의 설명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찬성하여 선서한 사제들은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부인하고 계몽주의와 카톨릭 교회 모두를 수용한 “공화파 그리스도교 *christianisme républicain*”의 새로운 교회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성직자 민사 기본법이 초대 교회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가장 존경할 만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혁

2) T. Tackett, *op.cit.*, pp. 77~92.

명이 ‘하느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민사 기본법을 제헌의회를 통한 ‘하느님의 기적’이며 ‘제2의 종교’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상당수의 신부들은 트리엔트공의회 이후의 교회의 가르침과는 달리 사회 속에서의 신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 ‘사제-시민 *prêtre-citoyen*’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선서를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단지 혁명에 대한 신앙 고백, 즉 철저히 세속적인 행위로 이해하였다. 또한 선서파 사제는 거부파 사제에 비해 신학과 교리보다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을 더 중시하였다. 기본법이 복음의 도덕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계몽주의적 윤리에 입각하여 새롭게 이 법을 해석하였다.

3) 선서파 사제와 거부파 사제의 동기 비교

타켓이 분석한 선언문에 나타난 성직자 자신들의 설명만으로 동기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타켓이 분석한 200여 개의 문서들은 전국을 대변하지 못하지만, 거부파 사제와 선서파 사제의 선서에 대한 설명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서파 사제와 거부파 사제의 설명에서 사회에서의 성직자 역할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나는 카톨릭 개혁 시기에 강조되었던 정통적인 모델과 관련된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루소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이다. 만약 거부파 사제가 자신의 역할을 성직자 계서제 안에 한정시켰다면, 선서파 사제는 자신을 전체 평신도 사회 안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자가 자신을 하느님의 시종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자신을 인류의 시종으로 보았다. 거부파 사제는 구원과 진리를 강조하는 데 반해, 선서파 사제는 공공 행복과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세계관과 내세관에 대한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서가 갖는 의미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거부파 사제가 선서에 대한 선택을 개인적 결정으로 보는 반면, 선서파 사제는 이를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축하 의식으로 보았다. 거부파 사제에게 선서는 신부들의 우애 공동체 안에서 취하는 개인적 선택이었던 반면에, 선서파 사제에게는 선서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이는 기회로서 신부의 애국주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선서는 무엇보다도 대중 앞에서 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아는 것 이상으로 떠들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신부들에게 있어 1791년의 선서는 지적인 딜레마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매우 비통한 경험이었다. 따라서 사제들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III. 텍스트 분석에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타켓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선서파 사제와 거부파 사제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타켓은 그들의 설명을 단지 주제별로 유형을 분류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타켓의 유형 분석은 텍스트를 단순히 연구하는 것(이를 사상사에서는 원전주의 *textualism*라고 부름)³⁾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스키너 Quentin Skinner는 이것을 “교의에 관한 신화 *mythology of doctrines*”라고 부르는데, 즉 원저자가 저술 속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거나 부수적으로 말한 것들에 대해 어떤 이론의 제창으로 간주하려는 오류를 말한다.⁴⁾ 또한 원저자의 견해는 항상 일관성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미 상정해놓은 입장과 설정한 주제에 따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 사상사학계에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스키너,

3) 원전주의란 원전 즉 텍스트 그 자체에 독자적인 자율적인 의미가 있으며, 결국 원전은 하나의 자기 충족적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과거의 문학적·철학적 저술에 내포된 영속적 요소, 보편적 관념 등을 추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하준, 『서양 근대 사상사 연구』, 탐구당, 1994, pp. 39~43.

4) Quentin Skinner,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 *History and Theory* 8: 1, 1969, p. 7.

포커크 J. G. A. Pocock, 던 J. Dunn, 새먼 J. H. M. Salmon 등을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자들은 전통적 사상사가들의 방법인 원전 자체만을 연구하는 원전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의 출발점은 종래의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의 사상 분석보다도 차라리 텍스트와 컨텍스트 *context*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명하는가 하는 물음이었다.⁵⁾ 수정주의자들은 사상사의 원전이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는 진술이나 명제가 아니며, 그것은 정치적 '담론 discourse'으로서 행위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그 담론이 속했던 문법을 파악해야 하고 그 담론을 당시대의 언어학적 관습 속에서의 위상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⁶⁾ 수정주의자들은 우리가 텍스트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를 정확한 언어학적 컨텍스트 안에서 위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컨텍스트는 텍스트에 앞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의 "상호 관련성 *intertextuality*" 속에서 서로를 만들어나아가는 것이며,⁷⁾ 따라서 컨텍스트는 그 자체가 이해되고 설명되어야 하는 텍스트라는 것이다.⁸⁾ 이러한 텍스트 읽기는 사료 해석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항상 몰두하고 있는 역사가들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텍스트 읽기를 위해서 1970년대 이후에 널리 알려진 그레마스 A. J. Greimas의 구조 의미론 *sémantique structurale*의 분석 방법론을 본문 분석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그의 기호학적 분

5) 차하순, 「서양 근대 사상사 연구」, 탐구당, 1994, pp. 33~56; 임상우, 「역사 서술과 문학적 상상력」, 『문학과사회』 19호, 1992; 김웅종, 「아널-역사와 사회과학」, 『문학과사회』, 1994를 참조할 것.

6) 차하순, 앞의 책, pp. 33~34.

7) John E. Toews, "Intellectual History after the Linguistic Turn," *American Historical Review*, No. 4, 1987, p. 886; Lynn Hunt, *The New Cultural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 114; Dominick LaCapra, *Rethinking Intellectual History- Texts, Contexts, Language*,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26~27.

8) Dominick LaCapra, *Rethinking Intellectual History*, pp. 95~96.

석 방법론은 불어권 지역에서 특히 문학·성서학과 기호신학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⁹⁾ 본고의 목적은 선별된 사료를 그레마스의 분석 방법을 통하여 새롭게 읽음으로써 사제들의 선서 동기를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타켓이 분석하였듯이, 선서파 사제들이 예컨대 '민사 기본법이 제2의 종교'라는식으로 혁명 이념에 대한 강력한 동조를 나타내고 있었는가? 트리엔트공의회 이후의 카톨릭의 가르침을 완전히 부정하고 18세기에 유포된 계몽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전통적인 카톨릭의 가르침과 실제로 다른 주장을 하였는가? 이들이 사용한 사회적·정치적 어휘들은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로서 사용되었는가? 그들은 혹시 그 지역 주민의 혁명 동조 성향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혹은 시대 상황에 밀려서 마음에도 없는 주장을 내세운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타켓이 인용한 선서파 사제들의 주장을 가운데 매우 강렬한 어조로 그들을 대변한 베르투 신부의 선언문 전체를 분석해보기로 하였다.¹⁰⁾ 베르투 신부는 당대인들에게 매우 강렬한 표현이었던 '민사 기본법은 제 2의 종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사 기본법을 옹호하였다. 선서파 사제 베르투의 텍스트 분석은 프랑스 혁명 당시 대부분의 사제들간의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선서를 둘러싼 논쟁의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9)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1966; A. J. Greimas, *Du sens—Essais sémiotiques*, Paris: Editions du Seuil, 1970; 국내 문헌으로는 송효섭, 「삼국유사 설화와 기호학」, 일조각, 1990; 성현경, 「南原古詞本 春香傳의 구조와 의미」(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저,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pp. 299~331; 최현무 역음, 「한국 문학과 기호학」, 문학과비평사, 1988; 서인석, 「성서와 언어과학 —구조 분석의 이론과 실천」, 성바오로 출판사, 1984; 서인석, 「기호학 교육론 —복음서의 이야기」, 성바오로 출판사, 1989를 참조할 것.

10) Timothy Tackett, *La révolution, l'église, La France*, Paris: Cerf, 1986, p. 88.

2. 선서파 사제의 텍스트 분석

I. 텍스트

제목: 크론 Crosne 본당의 주임 사제 *curé*이며 읍장 *maire*과 이어서 선거인단 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코르베이유 군 District de Corbeil의 행정관 *administrateur*이 1791년 1월 30일 선서에 앞서 행한 강론의 사본.
(출전: 파리 국립문서보관소 Archives Nationales F19.474: 혁명 시대 센에와즈 도의 교회 관계 문서들)

만약 같은 조국 *patrie*의 자녀들, 즉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동맹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을 진정 축제의 날로 여긴다면, 어찌 이 감정이 사제이자 한 사람의 시민인 나의 영혼 속에 달콤한 도취감으로 퍼져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의 사실들을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훌륭한 우리의 기본법(성직자에 관한 민사 기본법)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기본법 주장에 대한 노력, 이 기본법의 준수에 대한 나의 열정, 기본법의 권리를 행하려는 나의 용기, 이 법을 널리 전파하려는 나의 끈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본법이 위협받았을 때 내가 가졌던 불쾌함과 이 기본법이 승리했을 때의 나의 기쁨에 대한 성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본법이 나에게는 제2의 종교 *seconde religion*였다 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혜로운 자유와 온유한 평등, 사랑스러운 우애의 창조주 하느님은 또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

고 완성시키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단보다는 자기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 더 염려하는 어느 [거부파] 사제가 행한 최근의 공격, 우리의 제헌의회 의원이 공표한 새로운 조직에 반대하는 비난 연설의 홍수, 또한 국민 주권에 반대하는 모든 계층의 사제들의 반란과 목자와 양떼들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추한 분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를 공적인 일과 부패할 수 없는 애국주의의 가장 엄격한 수호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해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최연장자인 내가 우리의 공동의 집을 버리거나, 나에게 부여한 읍장, 선거인단 위원, 군 행정관으로서의 시민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손 안에 놓고자 하는 거룩한 서약은 그러므로 나의 바람과 감정, 작업, 그리고 나의 양심과 행동에 따른 지속적인 표현, 즉 성실한 표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렇듯 만용을 부리는 음모가들인 레위족 *lévites*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기본법에 원한을 품은 것입니까? 이 법은 절대 폐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열망하고 [기본법 반대를] 서두르는 것은 예전에 그들이 누렸던 쾌락 때문입니까? 그들의 노력은 그들의 후회만큼이나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계약의 궤 *arche sainte*를 중심으로 다시 모인 것입니까? 이 계약의 궤는 그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경륜 *économie évangélique*이 그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무기를 손에 지니게 했습니까? 이 무슨 망상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왕국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속한 재치권이 단지 거룩한 말씀의 설교와

성사의 집행에 있다는 것, 덕(德)과 지(智)가 다스리던 고대가 다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잊었다는 것입니까? 필연적인 결과로서 영적인 재치권이 모든 외적·정치적 지배에 무관하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상황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회생되기를 요구한다면, 그들은 민중을 가르치고, 도덕심을 훈련시키는 것, 평화와 구원으로 이끄는 것 외에 또 다른 임무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지난, 겹손, 자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세속 군주와 그 법에 대한 복종,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도피, 속세에서 멀시받는 것을 행하는 것을 기초로 그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하느님의 사도들이 반역적인 사치와 야욕적인 지배를 좋아하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야릇한 모순입니까?

저의 하늘의 주인의 교훈과 선례들에 순종하며, 사도적인 균원으로부터 분출해나오는 순수한 살아 있는 빛에 의해 인도되며, 그리스 도교의 황금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비추는 숭고한 진리와 고상한 감정에 젖은 제가 교만과 탐욕의 위선적인 억지에 의해 혼들리고, 스플라파 학자들의 간교한 주장에 의해 뒤흔들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인류의 적인 불확실한 세속적인 전통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의 목적은 종교 사회에서도 통치하는 이들이 아니라, 통치받는 이들의 이익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제헌의회가 주님의 영역을 차지하는 가라지들을 뿌리째 뽑으면서, [주님의 밭을] 폐허로 만들고 동시에 불모지로 만든 만용과 독직의 괴물스런 복합체를 파괴시키면서, 목자들에게 초대 교회의 질서로 다시 상기시키면서, 교회 제도를 왕국의 모든 제도들에 적용시키면서, 복음과 자유를 공공 행복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제헌의회의 권리 행사를 것을 내가 인정하고 어찌 큰 소리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

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에 대한 찬사를 보내기 위해, 또한 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나는 국민 *nation*과 법과 국왕에게 충성하며, 제헌의회 *Assemblée Nationale*가 결정하고 국왕이 받아들인 민사 기본법 *constitution*을 내 모든 힘을 다해 지킬 것을 선서합니다.

II. 텍스트의 성격과 저자

이 글은 1791년 1월 30일 파리 근교에 위치한 크론 성당에서 베르투 신부가 본당 신자들(크론 읍의 주민들)과 읍 행정관들 *officier municipal* 앞에서 성직자 민사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면서 행한 강론의 사본이다. 이 강론은 파리 국립 문서 보관소의 분류 번호 F19.474(혁명 기간의 센에와즈 도의 교회 관계 문서들)의 상자 속에서 발견한 크론 읍의 1791년 1월 31일자 행정 일지에 기록된 것이다. 이 강론은 센에와즈 도에서 발견된 선서파 사제들(센에와즈 도의 총 1087명의 본당 신부들 가운데서 908명이 선서함)의 강론들 가운데서 선택되어¹¹⁾ 제헌의회의 교회분과위원회 *Comité Ecclésiastique*에 보내졌다.

이 글이 강론 후에 인쇄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여러 상황으로 보아 이 글이 여러 사람에 의해 읽혀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글은 정치적인 선전을 목적으로 강론 후에 다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 가필 수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은 베르투 신부가 ‘듣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읽는 사람’을 위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저자 피에르-기욤 베르투 *Pierre-Guillaume Berthou*는 생브리의 *Saint-Brieuc*에서 1751년에 출생하였다.¹¹⁾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파리 소르본 대학 신학과의 학사(*Bachelier*와

11) 이 글 바로 앞에 있는 크론 읍 행정 일지, 1791년 1월 30일에 실린 내용을 보면 그의 강론은 “모든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Licencié)를 획득한 당대의 수재이다. 26세에 파리 근교의 모 Meaux시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1787년에 37세에 크론 본당의 주임사제로 임명되어 혁명을 맞게 된다. 1790년에 크론 읍 최초의 읍장 *maire*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코르베이유 군 District de Corbeil의 행정관이 되었다. 1791년 1월 30일에 민사 기본법에 대한 선서를 하였고, 혁명력 2년 브뤼메르 19일(1793년 11월 9일)에는 신부직을 포기 *abdication*하였다. 신부직 포기 후에도 읍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베르투는 1794년 3월에 체포될 때까지 읍 행정관으로 크론 읍에 거주하였다. 체포 후에 곧바로 풀려난 베르투는 크론을 떠났고, 혁명력 8년(1800)에는 뢨즈 Meuse 군대의 회계관으로 근무하였다. 1803년 정교 협약 이후에 센에와즈 도로 돌아와 주임사제로서 여러 본당(Ambleville 등)에서 활동한 후에, 1827년 2월 6일에 생브룅 Saint-Vrain에서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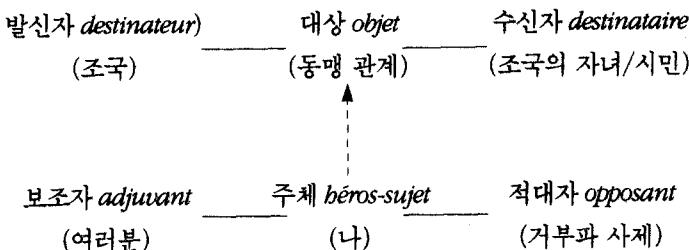
III. 텍스트 분석의 기초 작업

1) 행위항의 역할

이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이 텍스트 속의 작중인물들을 규명해야 한다. 이 글에 등장하는 작중인물들은 각자 서로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그레마스¹²⁾는 행위항 *actant*이라 부른다. 이 행위항들은 텍스트 안에서 그들이 갖는 상호 관계와 그들이 갖는 기능에 따라서 정의된다. 그레마스는 6명의 행위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의 모델을 아래의 도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12) Serge Bianchi, "Le curé citoyen de Crosne, Pierre Guillaume Berthou," 89 *en Essonne*, No. 4~5, pp. 54~57.

〈그림 1〉



그레마스의 행위항 모델로 본문을 분석해보면, 이 글에서 이야기에 발동을 거는 행위항인 ‘발신자 *destinateur*’는 조국이다. ‘주체 *sujet*’는 ‘나’(베르투 신부)이며, 나는 조국의 호소에 응답하여 민사 기본법을 통해 조국과 협약을 맺으며 결핍된 대상인 동맹 관계를 찾아나서는 자이다. ‘대상 *objet*’이란 주체가 결핍되어 있는 것, 곧 찾아와야 하는 대상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베르투 신부와 조국과 결핍된 동맹 관계를 말한다. ‘적대자 *opposant*’는 주체의 탐색 행위를 방해하는 거부파 사제들이다. ‘보조자 *adjuant*’는 탐색을 도와주는 자들로 ‘여러분들’이다. ‘수신자 *destinataire*’는 주체의 선서를 통해 조국과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자인데, 구체적으로는 본당 신도들, 넓게 본다면 ‘조국의 자녀들’ 즉 프랑스의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텍스트의 기본적 범주들

이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이 텍스트 속의 대립적 양형들이 어떻게 맺어지고, 또 이들이 어떻게 계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텍스트는 베르투 신부가 조국이 요구하는 선서(계약의 체결)를 하고 난 후, 거부파 사제들을 비판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글 속에는 계약의 체결 이후 신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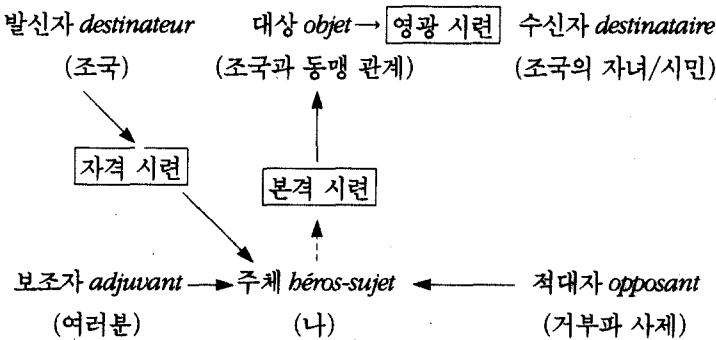
민, 종교/조국, 분리/통합, 음모가인 레위족/선서파 사제, 스콜라파 학자/선서파 사제, 민사 기본법/종교, 제헌의회/교회, 복음/자유 등 의 상호 대립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여, 각각 병렬적인 관계 *paradigmatic relation*를 이루면서, 한편으로 계기적 관계 *syntagmatic relation*를 형성하고 있다. 즉 이들 병렬체들이 계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립 양항은 결핍/충족이라고 볼 수 있다. 신부인 베르투가 조국과 동맹 관계를 탐색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는 신부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조국과 동맹 관계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이다. 이 자격 결핍/자격 획득을 근간으로 하여 주인공의 조국과 동맹 관계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결핍의 상황→결핍 극복을 위한 시련과 투쟁(과업의 수행)→결핍의 해소(과업의 완수)’ ‘불완전한 결합→선서→완전한 결합’의 제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 구조를 가진 텍스트는 자격 결핍의 상황(도입부), 극복 과정(전개부), 지양, 해소(종결부)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도입부·전개부·종결부를 이루면서 완결된다. 전개부에서 자격 결핍의 극복 과정, 자격의 획득 과정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거쳐 발생한다. 위기의 개념은 텍스트에서 가장 중대한 사항으로서 범주들의 체계 밀바닥에 갈려 있다. 여기서 그레마스는 세 가지 형태의 시련—자격 시련, 본격 시련, 영광 시련——을 제안한다.¹³⁾ 세 가지 형태의 시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위형 모델 안에 배치시킬 수 있다.

13) A. 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1966.

〈그림 2〉



자격 시련 *épreuve qualifiante*, 본격 시련 *épreuve principale*, 영광 시련 *épreuve glorifiante*이라는 세 가지 시련들은 텍스트의 도식 안에서 결과를 통해 현시된 의미론적 가능성의 부여 때문에 서로 구별된다. 즉 자격 시련은 능력 *compétence*의 취득에, 본격 시련은 수행 *performance*에, 영광 시련은 인정 *sanction*에 해당된다. 이 세가지 시련 중 자격 시련·본격 시련은 실천적 차원에 속하고 영광 시련은 인식적 차원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계기의 논리에 의하면 인정은 실천을 전제하고 있고 수행은 그에 해당되는 능력과 자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 안에서 영광 시련이 성립되는 것은 그에 선행하는 본격 시련을 비준한다는 것 때문이요, 또한 본격 시련은 자격 시련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IV. 텍스트의 계기적 구조 분석

1) 도입부(결핍의 상황): 첫째 문단

우선 제목을 주목해보면, 필자가 열거한 정치 경력에 이미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나타난다. 필자는 먼저 본당 주임신부 그리고 전(前) 읍장임을 내세운 다음에 점차 선거인단 위원, 군 행정관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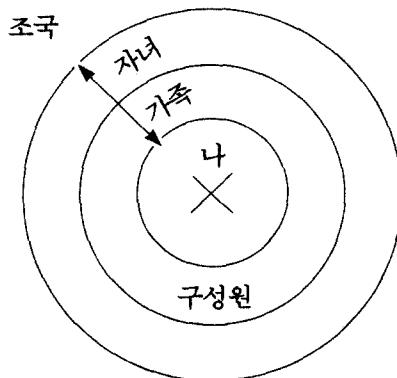
높은 관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치 경력들은 모두 크론 본당 주임신부라는 직책 뒤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곧 그의 정치 경력들이 모두 그의 성직에 비해 이차적인 경력이며, 동시에 그가 정치적 책임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 텍스트에 발동을 거는 결핍의 상황은 무엇인가? 첫번째 문단에서부터 “여러분”과 “나”와의 동맹 관계에 대한 결핍이 나타난다. 텍스트는 ‘발신자’인 조국의 조정 *manipulation*으로 시작한다. 발신자인 조국은 “나”를 주체의 자리에 배치시킨다. 나는 조국의 조종을 받아 결핍의 대상을 찾아 즉시 실행에 옮긴다. 내가 이행해야 할 임무는 조국이 명령하는 기본법에 대한 선서를 수락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주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제인 주체에게 결핍된 것은 조국과 동맹 관계이다. 여기서 결핍은 이 이야기의 지배적인 원동력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주체인 “나”는 글 서두를 주체의 선서식에 참석한 신도들 및 읍 행정관들과 주체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조국을 대표하는 “여러분”들과 주체인 “나” 사이에 동맹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있다. 1~2줄에 나타난 “자녀들과 조국” 그리고 “구성원들과 가족”은 곧 오늘 모인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들로, 이들은 각각 사회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어, 다음과 같은 그림을 도출해볼 수 있다.

〈그림 3〉

자녀들/조국: 정치·사회적 요소들
구성원들/가족: 생물학적 요소들



이 요소들이 모두 “그의 가족”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국의 자녀들”이 가장 큰 원을 그리면서 “같은 가족의 구성원들 *membres*”의 원을 감싸고 있어서, 두 원은 사실상 하나의 큰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 이 원의 중심에는 주체인 “내”가 위치하고 있고, 조국(발신자)이 나(주체)에게 벤져나온다. 또한 “구성원들”이 사회적 용어인 데 반해, “조국의 자녀들”은 생물학적인 용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조국이라는 정치적 유기체 *corps politique*와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유기체 *corps sociale* 그리고 자녀라는 생물학적 유기체 *corps biologique*를 갖는다.

“같은 조국의 자녀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 두 개의 주어가 하나의 동사인 “여긴다면”에 결린다. 주체인 “나”와 “여러분”은 이제 조국과 한몸을 이루는 동맹 관계를 과시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정치사회적인 유기체를 이루는 그들의 마을

의 한가운데(즉 성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공동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동맹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을 진정 축제의 날로 여긴다면”에서 “다시 새롭게 하다 *re-nouveler*”가 첫번째 행동이고 “강화하다 *re-serrer*: 다시 조이다”가 두번째 행동이다. 둘째 문단 중에 나타나는 동사들——“재생하다 *re-nouveler*” “강화하다 *re-serrer*” “재론하다 *re-dire*”——은 모두 재생·회복 혹은 새로운 동맹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축복의 날”(선서하는 날) 즉 새로운 동맹을 맺는 날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동사들이다. 필자는 그가 위치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유기체를 그려내고, 다시 조직하려는 작업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의 공동의 *notre commune*”가 아니라 “그들의 공동의 *leur commune*”인 것에 주목하자. 필자는 3인칭으로 첫 문단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 감정이 어찌 사제-시민의 영혼 속에 달콤한 도취감으로 퍼지지 않겠는가?”에서부터 3인칭으로 표현된 1인칭 즉 사제-시민인 “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문장에는 운동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의 행복”이 나에게 “퍼져야” 하기 때문이다. 발신자인 조국은 내가 “선서를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실현해야 할 프로그램(조국과 동맹 관계)을 주체인 나에게 주지시키고 또한 주체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치사회적 유기체가 생물학적 유기체와 결합하여 유기체를 재조직하는 문제이다. 그들은 “시민들”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다.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있게 마련인데, 그 어머니가 바로 조국이다. 이제야 비로소 정치적 유기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은 이미 생물학적 의미를 담고 있고, 한 개인이 이러한 이 중적 집단에 속하게 될 때, 비로소 필자도 사제이면서 시민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동맹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강화하는 경우에만, 필자의 [사제-시민으로서의] 선서도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축제의 날”은 우리에게 결핍된 동맹 관계를 다시 하고, 필자가 선서를 하

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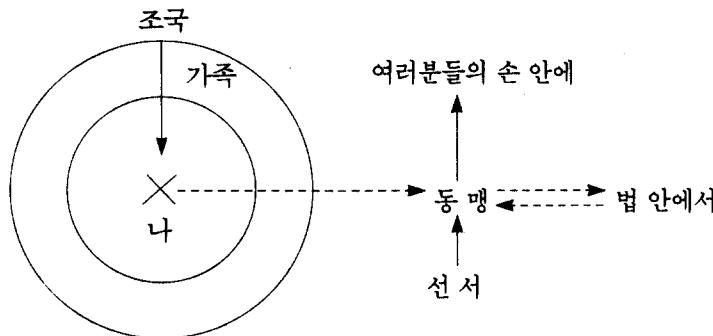
2) 전개부: 변형의 생성(둘째~일곱째 문단)

① 자격 시련: 두번째 문단

주체인 “나”는 조국과 동맹 관계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첫째 시련에 들어간다. 이 시련을 통하여 나는 주체로서 “능력을 취득 *acquisition de compétence*”하게 된다. 물론 본당 주임신부가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신부이면서, 또한 전읍장과 전선거인단 위원이요, 현재 군 행정관이기 때문에 시민이 될 수 있다. 나는 조국의 자녀요,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에 비로소 조국과 결핍된 동맹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주체의 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 시련을 거친 후에 나는 비로소 새로운 ‘보조자’들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 보조자는 내가 조국과 동맹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주체인 나는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나의 형제들”이라고 호칭할 수 있게 된다. 필자가 이 글의 서두를 “나의 형제들이여”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분명히 “나의 형제들이여”로 서두를 시작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국의 자녀” “가족의 구성원”부터 언급한 다음에야 비로소 “나의 형제들”을 부르는데, 그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시민적 우애(조국)와 인간적 우애(가족) 안에서 비로소 “여러분들”的 형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동맹 관계를 맺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 자신의 동맹(선서)의 필수적인 중인이 된다. 이러한 동맹의 결과로 여러분들과 내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사 기본법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필자는 동맹을 맺고 또한 선서를 하는데, 이것은 곧 기본법을 향해 서이다. '기본법'이 곧 우리의 보증인이다. 필자는 "여러분들은 나의 증인"으로서 한몸을 이룬 유기체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 이제는 기본 법 안에서 이 유기체의 정당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② 본격 시련: 세번째~네번째 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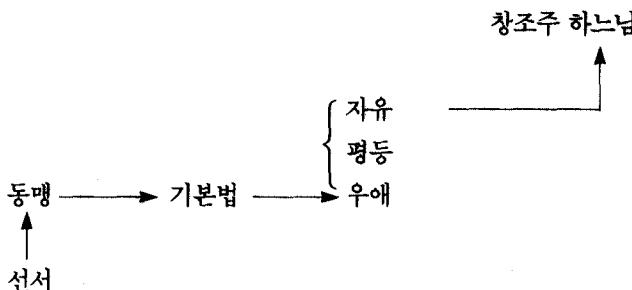
자격 시련을 통하여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춘 후에, 주체는 본격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 세번째 문단에서 본격 시련은 민사 기본법에 결핍되어 있는 종교와의 동맹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민사 기본법에 결핍되어 있던 '하느님과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주체인 나는 본격 시련을 극복하게 된다.

주체는 "기본법은 제2의 종교"라는 매우 강렬한 표현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이루는 유기체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법에 결핍되어 있는 하느님과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 문장은 텍스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표현에서 베르투 신부는 초대 교회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Tertullianus와 17세기 신학자 보쉬에 Bossuet 신부의 용어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 "법은

제2의 종교”에는 다음의 세 가지 용어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왕권 신수설로 저명한 보쉬에 신부는 “국왕은 곧 제2의 종교 *la Majesté du roi est une seconde religion*”라고 말한 바 있는데, 필자의 “제2의 종교”는 곧 보쉬에 신부의 용어를 그대로 표절하여, 보쉬에 신부의 “국왕” 대신 “법”으로 대체하였다. 둘째, 필자는 신부로서, “제2의 종교”라는 표현에서 민사 기본법의 종교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라는 용어의 어원을 보면(종교 *religion*는 라틴어로 *religio* 또는 *religare*인데 그 뜻은 *re-lier*(다시 묶다)), ‘각 사람들간의 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유기체가 인간들을 한 유기체로 다시 묶는 것을 말한다. 다시 뜻을 *religio* 즉 종교 없이는 정치도 없는 것이다. 셋째, 종교라는 단어는 또한 신심(信心)을 뜻하는 종교적 성격을 표현한다.

필자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과 나”的 보증인이 되는 성직자 민사 기본법이 제2의 종교이므로, 이 법은 또한 제1의 종교인 카톨릭 교회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느님과 밀접하게 연결 *religio*(다시 묶다)되어 있다. 그리하여 필자가 선서한 민사 기본법은 자유·평등·우애의 가치들에 의해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림 5〉



창조주는 자유 · 평등 · 우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자유 · 평등 · 우애는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오늘 축제의 날”에 “여러분들”은 다시 동맹을 맺고, 또한 “내”가 선서를 맺는 것 *re-ligio* 은 종교적인 행동인 동시에 정치적 행동이다. 우리는 여기서 문장 전체에 걸친 적절한 용어들의 활용을 통하여 필자가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이 강론을 라틴어로 구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다”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기억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나의 증인이 된다. 이 선서는 분명히 ‘*religio*’ 즉 다시 맺어져야 하는데, ‘*religio*’는 공적인 행동을 전제로 한다. 예배 *culte*는 바로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대외적인 사회적 행동이다. 그러므로 자유와 우애는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느님은 우리의 신앙의 창조주인 동시에 혁명 정부의 이념인 자유 · 평등 · 박애의 창조주이시다. 따라서 민사 기본법은 제헌의회의 작품인 동시에 하느님의 작품인 것이다. 민사 기본법에 결핍되어 있던 하느님과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주체인 나는 본격 시련을 극복하게 된다.

네번째 문단부터는 주체가 본격 시련을 극복하면서 본격적이고도 결정적인 투쟁의 주역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주체가 탐색의 대상인 동맹 관계를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대자 즉 거부파 사제들이 등장하여, 주체와 정면으로 대립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필자는 ‘공격 · 비난 · 반란 · 결별’ 등의 격렬한 용어들을 통하여 적대자인 거부파 사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non*”는 이 문장 전체 중 전개부의 절정을 이룬다. 필자는 가족의 구성원이었는데, 여기서는 “가족의 최연장자”로 등장한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 의심하지 않았습니다”에서 필자가 “버리는” “훼손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된 두 유기체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다시 맺을 수 *religio* 있게 된다. 만약에 필자가 버리고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였다면, ‘*religio*’를 파괴하여

두 유기체를 파괴하였을 것이다. 불어 원문의 동사들을 주목해보면, ‘voulu déserter(버리기를 원하다)’ 라 하지 않고 ‘consentit déserter(버리는 것에 동의하다)’라고 한 것은 그가 억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텍스트 전체에서 그가 사용하는 강렬한 표현과는 달리 사실상 그가 본당 신자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본격 시련을 통하여 즉 선서를 행함으로써 실현된 주체 *sujet réalisé*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 결과로서 “가족의 최연장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필자가 문장 서두부터 주임신부 이면서 전읍장, 선거인단 위원, 행정관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세속적 직위 없이는, 여러분들과 ‘religio’는 없기 때문이다. “공동의 집”은 곧 시청을 말하고, “형제들의 신뢰”는 곧 선거인단의 선거를 말하는데, 이러한 세속 활동들이 나를 보장해주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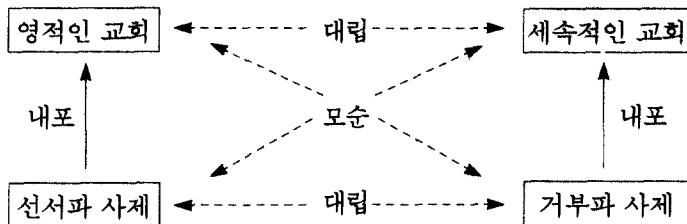
③ 영광 시련: 다섯째 ~ 일곱째 문단

이제 마지막 시련이 온다. 주체인 나는 “조국과 동맹 관계, 하느님과 동맹 관계를 이루는 자”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선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광 시련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격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선서의 중인에서 선서의 수신자로 바뀌게 된다.

다섯번째 문단에서 나는 ‘주교의 손에’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에” 선서함으로써, 나의 선서는 하느님의 대리자인 주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하느님께 전달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선서의 단순한 중인에서 선서를 하느님을 대신하여 받는 대리자로 바뀌는 것이다. 나의 선서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나를 ‘조국과 동맹 관계, 하느님과 동맹 관계를 이루는

자'로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주체로서 '조국 그리고 하느님과 동맹 관계를 이루는' 임무를 실현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동맹 관계를 새롭게 하였고, 나도 선서를 하여 동맹과 선서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주체는 영광 시련을 성공적으로 끝낸 후에, 가짜 주체 즉 우리의 '적대자'를 본격적으로 등장시키고 적대자를 처벌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적대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체는 교회를 '영적인 교회'와 '세속적인 교회'로 이분하고, 주체는 '영적인 교회'에, 적대자는 '세속적인 교회'에 속한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들의 왕국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에서 필자는 영적인 교회와 세속적인 교회의 두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 그들은 잊었다는 것입니까?"는 영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만약..... 이 얼마나 아름한 모순입니까?"는 영적인 교회와 반대되는 세속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복음의 경륜 *économie évangélique*"은 외적 지배나 정치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권력의 지배를 말한다. 여기서 '*économie*'의 그리스 어원은 'oikonomia'로, 세상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 무슨 망상입니까?"에서 '망상 *délire*'은 '경륜 *économie*'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적대자들은 통치할 능력이 없고 망상에 싸여 있으므로, 주체가 구성한 것과 같은 또 다른 유기체를 결코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잘 나타난다. 주체와 적대자 즉 선서파 사제와 거부파 사제 사이의 대립 관계, 이들이 속한 영적인 교회와 세속적인 교회간의 대립 관계를 아래와 같이 그림화할 수 있다.

〈그림 6〉 기호론적 사각형: 영적인 교회와 세속적인 교회의 대립.



일곱번째 문단에서는 왜 내가 버리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내가 가족의 최연장자라는 것을 다시 내보이고 있다. 앞의 문장에서와는 달리 나는 여러분들에게 문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모든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판관이지만, 모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즉 신부에게 속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문의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이제 주체는 영광 시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여러분들로부터 인정받은 주체임을 과시한다.

“인류의 적인 불확실한 세속적인 전통”은 곧 스콜라 철학에서 말하는 교회가 세속 국가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필자는 스콜라 철학을 신봉하는 전통적인 교회를 ‘세속적인 교회’로 분류하고, 이러한 전통적인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인류의 적’이라고 비판하였다.

3) 종결부: 새로운 질서의 회복: 여덟번째 문단

종결부에 이르러 주체에게 결핍된 동맹 관계가 회복되고 자격을 인정받은 주체는 이제 새로운 질서의 회복에 나서게 된다. “종교 사회에서도 *même religieuse*”라는 표현은 인권 선언의 제10조에서 인용한 것이다.¹⁵⁾ 문단 서두에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모두 종교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라는 정치 용

어들을 사용하여 세속적인 질서를 강조하였다. 주체는 이제 세속적인 질서 즉 제헌의회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마치 하느님은 영적 질서에 의해 움직이듯이, 제헌의회는 세속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 하느님은 영적인 질서에서 자유·평등·우애의 창조자이신 것과 같이, 제헌의회는 정치 질서에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제 여러분들로부터 인정받은 주체는 “가라지”나 “괴물스런 복합체” 등의 구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복음과 자유를 공공 행복에 기여하게 하는 등의 새 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 ‘복음’과 ‘자유’라는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음과 자유는 두 개의 ‘religio’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한다. 필자는 마치 하느님의 질서와 세속적인 질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이 세속적인 질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음과 자유를 공공 행복에 기여하게 함으로”에서 분명히 하느님의 복음과 세속적인 자유가 “공공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공공 행복”이라는 단어는 거부파 사제들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루소가 『사회 계약론』에서 강조한 용어로서, 베르투 신부가 계몽주의 철학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국 베르투 신부에게 세속적인 질서가 교회 질서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3. 맷는 말

그레마스의 구조 의미론의 계기적 구조 분석에 따르면, 이 텍스트

15) 인권 선언의 제1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전명한 조항으로서 “그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시키지 않는 한, 방해받을 수 없다.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입부(첫째 문단)에서 조국과 “나” 와의 동맹 관계의 결핍이 나타난다. 발신자인 조국은 주체인 “나”에게 결핍된 대상(즉 동맹 관계)을 찾아나설 것을 요구한다. 전개부(둘째~일곱째 문단)는 변형의 생성으로 크게 세 개의 시련으로 나누어 진다. 주체가 겪는 첫번째 시련은 자격 시련으로 “내”가 이 시련을 성공리에 끝마치게 되면 주체의 자격(시민-신부로서의 나)을 인정받게 된다. “나”는 시민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보조자들을 얻게 된다. “보조자”들은 오늘 선서하는 날에 성당에 모인 “여러분”들이다. 이 보조자들은 주체가 곧 이어 치르게 될 본격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들이다. 이제 주체는 결핍의 대상을 찾아나서게 된다. 두번째 시련인 본격 시련에서, 주체는 싸움을 치르고 나서 적대자가 빼앗아간 대상을 다시 찾아온다. 즉 “나”는 적대자인 거부파 사제들이 빼앗아간 동맹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주체는 적대자들로부터 공격당하며 그 동안에 보조자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세번째 시련은 영광 시련으로, 주체는 마지막으로 조국과 동맹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 동맹 관계를 이루는 영광 시련을 치르게 되고, 이 시련이 끝난 후에 주체는 충성 선서를 여러분들의 손에 함으로써, 주체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드디어 주체의 성공이 확인되고, 수신자는 더 이상 주체에 대해 인정의 양식을 발화 *énoncé*하지 않게 된다. 이때 적대자(혹은 가짜 주체)인 거부파 사제들의 가면이 벗겨지면서 그들은 처벌을 받는다. 종결부(여덟째 문단)는 해소 단계로 초장의 결핍이 메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회복된다. 주체는 구질서를 파괴하고 혁명에 의한 새로운 질서의 회복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통해 우리는 발화자의 의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의 언어 행위가 어느 만큼 독창적인가 혹은 관습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타켓의 피상적인 분석에서 나타난 선서파 사제들의 강력한 선서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는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베르투 신부의 텍스트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물론 베르투 신부의 텍스트 하나만으로 선서파 사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주장의 정당성을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레마스의 구조 의미론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베르투 신부의 강렬한 표현들에서 선서에 대한 강박관념, 본당 신도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잘 드러나게 되었다. 물론 그레마스의 분석 방법이 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는 없으나, 이 분석 방법을 통하여 이제까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과연 역사가들이 지극히 낯설어하는 기호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사실상 기호학은 학문적 최신 유행을 따르기 위하여 역사학에서의 '읽기' 행위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기호학은 오히려 텍스트를 일정한 도식 속에 가두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필자가 기호학에서 발견한 바는 기호학적 분석 방법이 이제까지의 읽기 행위(lire 즉 사료 판독)의 방법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뛰어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읽기 행위의 기계장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텍스트를 읽어 왔다. 그러나 선서파 사제의 강론과 같은 사료를 판독하면서 매우 면밀하게 하나의 사료를 이모저모로 분석할 필요를 느끼곤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정보 취득의 읽기 행위'가 아닌 '작업하는 읽기 행위'로 읊겨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텍스트 의미 작용의 소상한 조직 속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총괄적이고도 상세한 방식으로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방식이다. 기호학적 읽기 행위는 텍스트들 속에서 언어에 대한 주의력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에게 텍스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들을 던지

게 한다. 라카프라는 “기존의 역사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학적 언어로 썩어져 있는 텍스트 읽기 훈련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¹⁶⁾ 이렇게 될 때 역사도 드디어 19세기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대성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필자가 분석한 선서파 사제의 강론은 선서파 사제와 거부파 사제의 서로 다른 세계관·교회관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차후에 거부파 사제의 텍스트들도 정밀하게 분석하여 좀더 종합적으로 선서파 사제의 텍스트들과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강대 사학과 조교수)

참고 자료: 텍스트의 불어 원문

COPIE DU DISCOURS PRONONCE PAR M. LE CURE DE CROSNE
ANCIEN MAIRE DE LADITTE PAROISSE, PUIS ELECTEUR ET
ACTUELLEMENT ADMINISTRATEUR DU DISTRICT DE CORBEIL AVANT
LA PRESTATION DU SERMENT LE 30 JANVIER 1791

Si les enfants d'une même Patrie, les membres d'une même famille, regardent comme un jour de fête celui où ils sont invités à renouveler et à resserrer l'alliance protectrice de leur commune félicité: avec quelle délicieuse ivresse ce sentiment ne doit-il pas se répandre dans l'âme d'un prêtre -citoyen?

Vous savez, Mes frères, et je n'ai pas besoin de vous le redire; vous savez combien je chéris notre admirable Constitution; vous connaissez

16) Dominick LaCapra, *History and Critic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38.

mon application à en méditer la doctrine, et mon zèle à en suivre les progrès, et mon courage à venger ses droits et ma persévérance à étendre ses conquêtes; vous avez été les témoins assidus et de mes déplaisirs, quand elle est menacée, et de ma joie, quand elle triomphe.

Vous avez pu vous convaincre qu'elle était pour moi une seconde religion; parce que le dieu Créateur de la bienfaisante liberté, de la douce égalité, de l'aimable fraternité, de la justice universelle, ne mérite pas moins notre culte que l'auteur et le consommateur de notre foi.

Aussi, dans cette dernière agression d'un sacerdoce inquiet pour ses prérogatives encore plus que pour ses autels, dans ce torrent de déclamation calomnieuse contre la nouvelle organisation que nos représentants ont décrétée, dans cette rébellion des ministres de toutes les classes contre la Souveraineté Nationale, dans ces divorces fréquents et scandaleux entre les pasteurs et leurs troupes, je suis bien sûr que vous n'avez cessé de me compter au nombre des plus intrépides défenseurs de la chose publique et de l'incorruptible patriotisme. Non, vous n'avez pas craint un seul instant que l'aîné de la famille consentit à désérer la maison commune, à trahir la confiance de ses frères, à flétrir les honneurs civiques de maire, d'électeur et d'administrateur qui lui avaient été décernés.

Le serment solennel que je vais déposer entre vos mains ne saurait donc être autre chose que l'expression sincère, l'expression constante de mes voeux, de mes sentiments, de mes travaux, de ma conscience et de ma conduite. Et que prétendent ces lévites abusés et conspirateurs? Est-ce à la Constitution qu'ils en veulent? Elle est invincible. Est-ce après leurs

anciennes jouissances qu'ils soupirent et se précipitent? Leurs efforts sont aussi vains que leurs regrets. Est-ce autour de l'arche sainte qu'ils se réunissent? Elle n'a pas besoin de leur bouclier. Est-ce l'économie évangélique qui les éveille et leur met les armes à la main? Quel délit! Ont-ils donc oublié que leur règne n'est pas de ce monde, que la juridiction qui leur appartient essentiellement, est concentrée dans la prédication de la parole sainte et l'administration des sacrements, que la vertueuse et docte antiquité n'en a point connu d'autres; et par une conséquence nécessaire que cette juridiction toute spirituelle demeure étrangère à tout gouvernement extérieur et politique? Ont-ils donc reçu un autre ministère que celui d'instruire les peuples, de les former à la vertu de leur apporter la paix et le salut; et si les circonstances l'exigèrent de s'immoler à leur bonheur? Par quel étrange contraste les disciples d'un Dieu qui a fondé son église sur la pauvreté, l'humilité, la charité, le renoncement à soi-même, la soumission au souverain et à ses lois, la fuite de ce que le monde préconise, la pratique de ce qu'il dédaigne, affectent-ils aujourd'hui une factieuse opulence, une ambitieuse domination?

Docile aux leçons et aux exemples de mon divin maître, guidé par les pures et vives lumières qui jaillissent des sources apostoliques, pénétré des nobles sentiments et des sublimes vérités qui illustreront cet âge justement nommé l'âge d'or du christianisme, pourrais-je être ébranlé par les raisonnement hypocrites de l'orgueil, de la cupidité, par les arguments subtils de la scolastique? Pourrais-je écouter les traditions profanes incertaines, ennemis du genre humain?

Bien convaincu que le but de la société, même religieuse, est de

procurer l'avantage de ceux qui sont gouvernés et non de ceux qui gouvernent, pourrais-je ne pas reconnaître et publier hautement que l'Assemblée Nationale a usé de son droit en extirpant l'ivraie qui couvrait le champ du Seigneur, en moissonnant ce monstrueux assemblage d'abus et de prévarications qui le rendaient tout à la fois informe et stérile, en ramenant les pasteurs, à l'ordre primitif, en adaptant le régime ecclésiastique à toutes les institutions de l'empire, en faisant concourir au système du bonheur public, l'évangile et la liberté. En conséquence pour rendre hommage à la vérité que je vous devois, obéissans à la loi qui commande, Je jure……